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1. 제안경위

가.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
(2025.7.23.)함.

나.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25.7.29.)에서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에 회부함.

다.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25.9.23.)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견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25.9.24.)에서 소위원
회에서 의결한 위원회안과 서면동의로 제출된 위원회안을 병합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
· 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
직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

보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수집·관리·활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 등).

나. 국회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다. 정부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3호).

라.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위원회로 하고, 재정경제부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2호).

바.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4호).

사.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하고,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7호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제22조의5로 하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4(국회기록원)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아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제3호라목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제12호 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
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사.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7.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9조의2제3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6항 단서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4·제22
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자목, 같은 항 제3호라목,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

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4(국회기록원) ① 국회</u> <u>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u> <u>· 분류 · 정리 · 보존 · 평가 · 활</u> <u>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u> <u>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u> <u>회기록원을 둔다.</u> <u>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u> <u>필요한 공무원을 둔다.</u> <u>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u> <u>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u> <u>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u> <u>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u> <u>로 법률로 정한다.</u>
<u>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생</u> <u>략)</u>	<u>제22조의5(국회세종의사당) (현행</u> <u>제22조의4와 같음)</u>
<u>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u> <u>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u> <u>항은 다음과 같다.</u> <u>1. 국회운영위원회</u> <u> 가. ~ 바. (생 략)</u>	<u>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u> <u>-----</u> <u>-----.</u> <u>1. -----</u> <u> 가. ~ 바. (현행과 같음)</u> <u> 사.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u> <u> 는 사항</u> <u> 아. (현행 사목과 같음)</u>
<u><신 설></u> <u>사. (생 략)</u>	

<신 설>

- 아. (생 략)
2. (생 략)
3. 정부위원회
가. ~ 다. (생 략)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마. (생 략)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
는 사항

<신 설>

- 나. (생 략)
5. ~ 11. (생 략)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생 략)

<신 설>

13. (생 략)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
항

자.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
는 사항

- 차. (현행 아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금융감독위원회 -----

마. (현행과 같음)
4. 재정경제위원회
가. 재정경제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
하는 사항

- 다. (현행 나목과 같음)
5. ~ 11. (현행과 같음)
12. -----

가. 산업통상부-----

나. (현행과 같음)
다.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
는 사항

13. (현행과 같음)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생 략)

15. · 16. (생 략)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생 략)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생 략)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현행과 같음)

15. · 16. (현행과 같음)

17.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성평등가족위원회-----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